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서종수 의원)

의안 번호	20-152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0. 10. .

발의자: 서종수, 김기석, 김영미, 김진천,
이민석, 최은하, 한일용

1. 개정이유

상위법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과 달리 동 조례에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어 관련 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함

2. 주요내용

상위법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과 달리 동 조례에서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 삭제(안 제9조)

3. 관계법령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37조

4. 예산조치: 없음

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0. 10. 16. ~ 2020. 10. 21.

나. 붙임: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대규모 점포와”를 “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”로, “50인 이상의 연서로, 법 제8조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 및 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단독으로 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조정 신청) ① <u>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, 법 제8조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 및 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9조(조정 신청) ① <u>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-----위원회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【관 계 법 령】

「유통산업발전법」

제37조(분쟁의 조정) ①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시(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)·군·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·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시·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시·군·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,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3. 1. 23.]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김승원
연 락 처	02-3153-8584